

# 수 원 지 방 법 원

## 제 2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06나159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정○○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박호균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대표이사 배정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영석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6. 23. 선고 2005가단37108 판결  
변 론 종 결 2007. 8. 17.  
판 결 선 고 2007.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노규보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 관리공단 하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 감정인 한경진의 신체감정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2002. 8. 14.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수익자를 원고 또는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상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삼성 종신 스페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재해 상해 특약(이하, 이 사건 상해특약이라고 한다)에도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①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 ②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2004. 8. 14.까지
- ③ 보험가입금액 : 3억 원 한도.

나. 이 사건 상해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②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영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분류표상 제6급의 장해에 해당한다.

③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 제2 내지 6급의 장해를 입을 경우 각 보험가입금액의 10% 내지 7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제6급 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한다.

④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는 위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04. 3. 15.경 동료들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라. 원고는 2004. 6. 25.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국립경찰병원에 내원하였다가 2004. 7. 31. 같은 병원에 좌측 후방 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같은 해 8. 2. 같은 병원에서 관절내시경 인대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위 수술 후 좌 슬관절 후방 동요(경도, 우측 비교시 5mm 차이)의 장해(이

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상해특약의 장해분류표상 제6급 장해에 해당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04. 6. 25. 국립경찰병원을 내원하기 전에 무릎 이상으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사.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은 교통사고나 과격한 운동으로 빠르게 움직이다가 무릎을 부딪칠 때, 뛰다가 갑자기 멈출 때 경골과 대퇴골에 붙어 있는 후방십자인대가 뒤쪽으로 밀리게 되어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등 대부분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과 같은 단순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파열되지는 않으며,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생기면 운동을 할 때 무릎이 흔들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주변 연골이 손상되고 관절염이 동반되기도 하나, 파열 상태를 즉각적으로 자각하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및 장해가 보험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그에 대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제6급의 이 사건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해는 기왕증이 외래의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지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해특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해특약상의 재해, 즉,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감정인 한정진의 일부 신체감정결과는 당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감정인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립경찰병원에 내원하여 한진술('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불안정성을 느껴왔다', '1년 전부터 동통을 느꼈다', '2년 전 축구도중 좌측 무릎 통증이 있었다')은 하지 않은 채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그 이후 무릎에 불안정성이 느껴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음)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험만을 진술하여 감정인이 이를 토대로만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을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04. 6. 25. 국립경찰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를 당한 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무릎 이상으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노규보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 정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2. 8. 2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동대, 지구대 등에서 경찰관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상해를 진단받기까지 3개월 여간 아무런 치료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사고 후 좌측 무릎이 아

파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 점, ③ 원고가 2004. 6. 25. 국립경찰병원을 내원할 당시 좌측 무릎의 동통 원인과 관련하여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불안 전성을 느껴왔다'거나 '1년 전부터 동통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좌측 무릎에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2004. 7. 31. 국립경찰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좌측 무릎의 동통 원인과 관련하여 '2년 전 축구도중 좌측 무릎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 없이 지내오다가 2004. 5.경 무릎 통증이 와서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원고가 피고에게 애초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술비 및 입원비를 청구할 때 이 사건 상해의 원인에 대해 '2004. 6.경 기동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비로소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을 이 사건 사고라고 진술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또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이미 원고가 국립경찰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의 원인으로 진술한 요인들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① 내지 ⑥항의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하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기존 질병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명시,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상해특약상의 재해의 정의에 관한 약관 중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를 명시, 설명한 바가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면책약관 조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2) 판단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나아가 이 사건 상해특약과 같은 상해보험은 그 속성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고, 나아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관의 내용 즉, 질병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을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_\_\_\_\_

                 판사      류종명 \_\_\_\_\_

                 판사      방선옥 \_\_\_\_\_